광주 송정동 우림필유 입주자 모집공고(안)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건축과 - 13932호(2008.03.13)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15-3번지 외 8필지 ■ 대지면적 : 25,287㎡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3층, 지상13~15층, 아파트 7개동 총 3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3자녀특별공급포함) 1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1855-01	2008000326(01)	109.4053	84.7629	24.6424	109.4053	34.0920	143.4973	58.4882	250	13~15
	21855-02	2008000326(02)	149.4783	126.1070	23.3713	149.4783	50.7208	200.1991	87.0165	118	14~15

(단위 : ㎡, 천원, VAT포함)

주택형(㎡)	층별 구분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총분양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1회(10%) 2008. 7. 21	2회(10%) 2008. 10. 20	3회(10%) 2009. 1. 20	4회(10%) 2009. 5. 20	5회(10%) 2009. 9. 21	6회(10%) 2010. 1. 20	
109.4053	1층	250	14	101,700	178,300	28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84,000
	2층		14	107,700	188,300	290,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87,000
	3층		18	107,700	208,300	310,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93,000
	기준층		186	107,700	218,300	320,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96,000
	최상층		18	101,700	228,300	330,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99,000
149.4783	1층	118	8	151,400	297,600	449,000	44,900	44,900	44,900	44,900	44,900	44,900	44,900	134,700
	2층		8	151,400	318,600	470,000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141,000
	3층		8	151,400	338,600	490,0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147,000
	기준층		86	151,400	348,600	5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50,000
	최상층		8	151,400	368,600	520,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156,000

평형환산방법	109.4053㎡	149.4783㎡
㎡× 0.3025 또는㎡÷ 3.3058	(구)33평형	(구)45평형

· 경기도 광주시는 2003.6.7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분도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 청약가능) 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는 2007.9.1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률이 30%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수납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당 사업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적용으로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 함.
·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 공유지분에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기본금액 ①	공급금액		비고
			확장금액 ②	계약자 납부금액 ②-①	
109.4053㎡	침실2, 침실3, 거실	2,970,000	15,990,000	13,020,000	안방 비확장 금액
149.4783㎡	침실2, 침실3, 침실4, 부부욕실, 거실	4,870,000	22,430,000	17,560,000	

· 확장 대상 발코니 위치는 견본주택 방문시 확인 바람
· 상기 금액은 발코니 확장시 기본사양 적용 금액이며, 이외 추가 옵션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목 및 가격은 견본주택 방문시 확인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발코니 확장공사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회사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해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세대주의 인정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합니다.
- 세대주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자녀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3. 14.)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청약예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재당첨금지 적용자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수 있는 전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3자녀 특별공급세대: 일반공급 368세대 중 3%인 11세대(전주택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의 의함) 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 참조)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구분	109.4053㎡	149.4783㎡	계
경기도	4	2	6
서울시	2	1	3
인천시	2	-	2
공급세대	8	3	11

·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신청일자 및 장소 : 2008. 3.18 (10:00 ~ 15:00),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3.18(15:30),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추후 부적격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함

2)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 규칙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비서류
①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③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호적등본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⑤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⑥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⑦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⑧ 신분증 ⑨ 인감도장
⑩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⑪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3)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3. 14.)현재 광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입주자 모집공고 분 전체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광주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광주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광주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가능함)
· 동일 순위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광주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되며,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1순위 주택당첨자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주택형 (㎡)	신청자격 청약관련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가점제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광주시 / 수도권	08.3.19 (수)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t2you.com - KB모바일 ·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08:30~18:00	· 발표일시: 2008.3.27(13:00) 서울경제 게재 · 장소 : 당사견본주택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해당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80.8.29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에 가입한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한 분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전용 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 5. 이후 가입자에 한함)				
	2순위	전용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08.3.20 (목)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08.3.21 (금)	우리은행 본/지점 (09:30~16:3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가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는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장애인 창구청약 가능시간 :09:30~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
·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호적등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④ 감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 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④

■ 가점 항목별 적용 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 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하여 같은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다만,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14일)내에 '주택소유에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직계존속 포함) 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 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 보유 특례)
1.(현재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2.(현재무주택)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경과기간 및 요건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의 민영주택에는 청약 신청이 가능함
· 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 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예치금액 상호간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변경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변경후 1년 동안은 변경전 주택규모에만 청약가능하고 1년 후에는 변경후 주택규모만 청약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청접수 방법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광주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청약순위에 따른 일정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단,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가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각 지역별,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공급하며, 85㎡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인터넷 · ARS · KB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분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n.com)
	KB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M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우리은행) ·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증서)(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실세대구성시:주민등록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시:호적등본1통) 배우자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도 제3자)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 인감도장(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거주개시일,무주택세대주기간,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 신청금	2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환불대상	구비서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 3. 28) 이후 (평일 09:30~16:30, 토, 일요일은 제외)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광주지점	3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주민등록증 ③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 구비사항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1통 :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 위임장 - 제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단,청약자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지정계좌로 이체신청을 통해 입금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3자녀 이상)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특별공급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공통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단,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드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저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신청자가 수도권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자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 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금융기관명	우리은행	- 계약기간 : 2008. 4.1(화) ~ 2008. 4.3(목) (3일간 : 매일 10:00~16:30)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계좌번호	1005-801-118849	
예금주	우림건설(주)외 2인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1순위 당첨자는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시 구비 사항

구분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용) · 계약금(가능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세대주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초본1통 - 호적등본 1통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 호적등본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본인 계약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여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2002. 9 . 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거나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변동에 대한 차후 정산금액은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

■ 입주 예정일 : 2010년 5월(정확한 입주일은 추후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건설 교통부 입주자 사전 점검 요령에 의거 점검)

·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에 대해서는 입주개시 1~2개월 전 특정일자를 지정,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노인정, 상가 등

■ 융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알선한 금융기관의 입주금 대출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월 전월까지 당사에서 대납해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는 당사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이자후불제)
· 당사업지는 총분양금액의 40%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시행자 및 시공자의 연대보증으로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잔금 정산시 연대보증의 해지업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절차를 지정법무사(변호사)를 통하여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 ARS · KB모바일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아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n.com)에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2008. 3. 27 ~ 2008. 4. 5	2008. 3. 27 ~ 2008. 4. 5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70]	☎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08. 3. 27 ~ 2008. 4. 5	2008. 3. 27 ~ 2008. 4. 5
KB모바일	이용방법	SKT : Mbank 접속 → M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KTF,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 3. 27 ~ 2008. 4. 5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8. 3. 27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 106, 107동 후면 출입구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106, 107동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의 길이가 다소 길어집니다
· 105, 106, 107동 1~2층 일부는 후면 조망이 다소 불리합니다
· 101, 105동 하부에 노인정 및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여 소음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 2층의 출입구와 주민공동시설의 홀과 연결되어 105동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일부가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2개소에 경비실이 설치되나, 상가계단으로 출입에 따른 경비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다락은 건축법상 거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전용면적 및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냉 ·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단위세대 평면은 다락계단의 설치에 따라 기준층 평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09㎡형과, 149㎡형 안방 발코니는 비확장 발코니 입니다.
· 전시모형 및 카다로그 상의 표현된 조감도 및 각종 투시도는 전세대가 확장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105동 1~2층 전체는 PIT 층이며, 105동 지하 하부에는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 됩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 입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동방향 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등 일부세대는 조망 및 오전 일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측에 면한 101~104동은 소음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상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면적 중 코어 면적은 각동의 코어 면적을 합산한 후 세대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 입니다.
· 주변단지 및 신축,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인접동에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스크린도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측정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 배기용 DRY AREA가 일부 동 주변 및 단지 외곽부, 단지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및 주방배기를 위한 무동력 팬이 설치가 됨(전시 모형 및 CG등 미표기)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 (입면, 색채, 재질, 간판위치, 조경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명 및 동,호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이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관리비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등 인허가 과정에 따라 대지 경계 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본 카다로그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로그에 명기된 치수는 안목치수이며 건축법상 허용되는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장시 설치되는 발코니 새시(복층유리 이중창호)는 실시공시 성능 및 구조 검토를 통해 동질수준 이상의 다른 창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새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시 별도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에 의해 체결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자재의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하자보수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진행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로 선택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시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채무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기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공사의 이행을 말합니다.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96,216,400,000원	제 01282008-101-0003200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대한주택보증(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 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회사명	금액	비고
건축	(주)유원건축사사무소	1,093,889,974	VAT별도
통신,소방	(주)수양엔지니어링	80,000,000	

■ 시 행 사 : 한솔공영(주) 대표이사 유시영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5-3)
정인건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건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0-5)
■ 시 공 사 : 우림건설(주) 대표이사 심영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3-1)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 견본주택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53 주택공원 전시관 2층(문의 : ☎ 031-719-5544)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oolim 우림건설 fill U 우림필유